

문서번호 영동군의회 2019 - 8

시행일자 2019. 4. 1.

수 신 영동군의회 의장

(경유)

제 목 영동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의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영동군 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 붙 임 1. 영동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발의자 명부 1부. 끝.

발의자 : 의원 이 대 호 (인) 외 7인

영동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이대호의원 외 7
발의년월일	2019. 4. 1.

영동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19-
----------	-------

발의년월일 : 2019. 4. 1.

발 의 자 : 이대호,윤석진,이수동,정진규,
김용래,이승주,남기학,정은교

1. 제안이유

- 영동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지원제외, 회수, 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8조)

첨부 영동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영동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영동군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행 보조기구로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차상위 계층
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② 제1항의 대상자 이외에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성인용 보행기는 5년을 주기로 1인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잦은 고장, 수리불가 등으로 사실상 성인용 보행기를 이용하기 어려워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장·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장·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의 지원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7조(지원회수) 허위, 중복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물품을 회수할 수 있다.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 군수는 지원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성인용 보행기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원된 성인용 보행기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것으로 본다.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 「영동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 확인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주택, 휴대전화), 주소, 장기요양등급, 기초생활보장 정보 및 차상위 계층 보장 여부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 지원금 지급 시점으로부터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

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행복이음을 통한 장기요양등급 및 사회보장급여 적합 여부 조회 동의 】

- 영동군은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신청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장기요양등급 및 사회보장급여 적합 여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대상자 확인을 위한 장기요양등급 및 사회보장급여 적합 여부 이용

행복이음을 통한 장기요양등급 및 사회보장급여 적합 여부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

발의자 명부

직 책	성 명	서명또는날인	비 고
의 원	이 대 호		
의 원	윤 석 진		
의 원	이 수 동		
의 원	정 진 규		
의 원	김 용 래		
의 원	이 승 주		
의 원	남 기 학		
의 원	정 은 교		